<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1655 heugdamjeong.kr

흑담정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4-12-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10

흑담정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우분트월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우분트월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u>가맹거래사</u>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02, 6층 601호(오금동, 신대원빌딩)

대표전화: 1577-0946 가맹사업부전화: 1577-0946

팩스번호: 02-6677-238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첨2]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현황 수령확인증

[별첨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4] 당사와 거래해야 할 설비 / 집기 품목

[별첨5] 원·부재료, 완제품 등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 리스트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 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기 | 주 소 | | | | | | |
|-----------------|------------|--|------------|---------|-----------|----|--------------|--|
| 7 114111 | 흑담정 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02, 6층 601호 (오금동, 신대원빌딩) | | | | | | |
| 주식회사 우분트월드 | 법인 설립등기일 | 일 사업자등 | 사업자등록일 | | 대표전화 | 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2014-02-21 | 2014-0 | 2014-02-21 | | 1577-0946 | | 02-6677-2381 | |
| | 법인등록번호 7 | 284911-012 | 23891 | 사업자등록번호 | | 1 | 141-81-39713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 [] 7 0 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02, 6층 601호 (오금동, 신대원빌딩) | | | |
| │ 대표이사 │ 이권효 | 이권요 | 흑담정 외 2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이권효 | 1577-0946 | 02-6677-2381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 송파구 중대로 30 오금동, 신대원빌딩 | | |
| 사내이사 황경희 | 황경희 | 희 흑담정 외 2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이권효 | 1577-0946 | 02-6677-2381 |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 1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흑담정 | |
| 상 호 | 흑담정 OO점 | |
| 상표(서비스표) | 흑담정 | 43류 출원번호(일자) 40-2024-0199019 (2024.10.31.) |
| 광 고 |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3년 | 11,527,649 | 6,323,799 | 5,203,850 | 20,709,936 | 2,763,818 | 2,629,498 |
| 2022년 | 6,406,895 | 3,832,543 | 2,574,352 | 11,466,145 | 1,518,532 | 1,109,140 |
| 2021년 | 4,518,053 | 3,052,842 | 1,465,211 | 6,515,442 | 558,865 | 571,770 |

- 그 근거자료는 [별첨4]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ㅂ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丁正 | 구분 이름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 |
| 가맹사업 | 이권효 | 대표이사 | 2014.02 ~ 현재 | 주식회사 우분트월드 대표이사 | 회사 업무 총괄 | | | |
| 관련 임원 | 황경희 | 사내이사 | 2015.01 ~ 현재 | 주식회사 우분트월드 사내이사 | 관리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정 | 임원= | 수(명) | 지이스/며\ |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직원수(명) | |
| 2023년 12월 31일 | 2 | - | 28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주식회사 우분트월드 | 가맹사업 경영 | 2018.01 ~ 현재 | 일품양평해장국 (등록번호:20180410)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외식사업 경영 |
| 가맹본부 | 주식회사 우분트월드 | 가맹사업 경영 | 2020.04 ~ 현재 | 편백가원 (등록번호:20201130)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외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등록권리자 | 존속기간 만료일 |
|-----|----------------------|------------------------|------------------------|-------|-------------|
| 흑담정 | 외장, 인테리어, 영업표지 | 2024.10.31. 출원 | 출원 제40-2024-0199019 | 이권효 | - |

- ▶ 당사는 상표권자와 상표사용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흑담정]을 시작한 날 : 해당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해당없음)

2. [흑담정]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조시하다 | 일품양평해 | 이권효 | 2018.01.01.~2023. 05.22.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56, 405-1호(백석동, 크리스탈빌딩) |
| 주식회사 우분트월드 | 장국1) | | 2023.05.22.~현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02, 6층 601호 |
| | 흑담정 | | 가맹사업 준비 중 | |

3. [흑담정]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흑담정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u>≒</u> 60 | 한식 | 흑염소탕 | | |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TICH |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지역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 전체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¹⁾ 동일 업종 운영 경험 관련 사항

| 충북 충남 | | | | | |
|----------|--|--|--|--|--|
| 충남 | | | | | |
| 전북 전남 | | | | | |
| | | | | | |
| 경북 | | | | | |
| 경북 경남 | | | | | |
| 제주 | | | | |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3 | | | | | | |
| 2022 | | | | | | |
| 2021 | | | | | | |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흑담정]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 | 업종 | 가민 | J점/직영점으 | l 수 |
|------|--------|-------------|----------|----------|-------------|-------------|-------------|
| 下正 | 중오/이금 | 정답표시 | 등록번호 | <u>П</u>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가맹본부 | ㈜우분트월드 | 일품양평 해장국 | 20201130 | 한식 | 114/0 | 173/0 | 282/0 |
| 가맹본부 | ㈜우분트월드 | 편백가원 | 20201130 | 한식 | 0/2 | 2/2 | 10/2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2023년 | 2023년 기 | ⁺ 맹점사업자의 연간 | 평균 매출액 | |
|----|----------|-----------|------------------------|--------|-----|
| 지역 | 말 | 연간 평균 매출액 | 연간 평균 | 연간 평균 | 산출수 |

| | | | | 매출액 | (상한) | 매출액 | (하한) | |
|----------|----------|-----------------|---------------|-----|---------------|-----|--------------|--|
| | 가맹점 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3.3 m²3당 | 상한 | 면적3.3 m²3당 | 하한 | 면적3.3㎡ 3당 | |
| 전체 | | | | | | | | |
| 서울 | | | | | | | | |
| 부산 대구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세종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 | | | | | | | | |
| 강원 |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제주 | | | | | | | | |

- ▶ 당사는 POS자료를 근거로 가맹점사업자 매출액을 산정할 예정이며, 영업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흑담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흑담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년도 |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흑담정]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 다음과 같으며, 브랜드별 구분이 불가능하여 합계를 기재하였습니다.

| ٦μ | 수단 | 71.7L |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브 | 부가세 미포함) |] |
|----|----|-------|--------|-----------|----------|----|
| 구분 | | 기간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비고 |
| 광고 | 광고 | 2023년 | _ | - | - | |
| 판촉 | 판촉 | 2023년 | | | | |
| 합계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기업은행 | 광명지점 | 지점 및 인터넷뱅킹 | 1566-2566(내선 0->4)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u>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u>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반환을 요청한 경우에 는 4개월 이내 반환 청구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수도공사,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냉동냉장기기, 닥트공사,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 가맹본부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11,000 | 계약체결 후 예치 | 당사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 가맹계약체결후 (당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불가) | - |
| 교육비 | 5,500 | 계약체결 후 예치 | 교육시작 1일전 | 교육 실시 후 | 2인 기준 |
| 총계 | 16,500 | - | - | - | - |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계약이행 보증금 | 2,000 | 계약체결 후 예치 | 미납채무,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위약금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 잔존채무, 손해배상 액 등과 정산 후 반환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 비고 |
|---------|------------|--------|
| 가맹비 | 11,000 | 부가세 포함 |
| 교육비 | 5,500 | 부가세 포함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부가세 없음 |
| 합계 | 18,500 |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3.3m²3 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인테리어 | 협력업체 | 56,100 | 1,870 | - 계약시 : 50% - 중도금 : 30% - 완공시: 20% | 미공사분 | 30평 기준 |
| 간판 | | 4,400 | | | | |
| 주방기기/집기 | 가맹본부 | 22,000 | 733 | 계약시 | 미제작시 | |
| 의탁자 | | 5,500 | | | | |
| POS 프로그램 | 협력업체 | 별도계약 | | 매월 지정일 | 설치전 | |
| 테이블오더 프로그램 | 협력업체 | 별도계약 | | 매월 지정일 | 설치전 | |
| 최초 공급 품목비용 | 가맹본부 | 5,500 | | 본사 협의 | 미공급시 | |
| 총계 | | 93,500 | | | | |

매장의 형태,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면 제공 및 디자인 노하우 전수비로 3.3㎡(1평) 기준으로 33만원(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도시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 사, 닥트공사, 냉난방설비, 수도시설, 간판공사, 외부공사, 가구공사, 상하수도 유입 공사, 도시가스공사, 소방설비, 음향기기, 철거비용 등)은 총계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본부는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광고 분담금 | 가맹본부 | 협의 | 2주일 전 | 실시 전 | 실시 후 | V.9.1) 분담기준 참조 |
| 판촉 분담금 | 가맹본부 | 협의 | 2주일 전 | 실시 전 | 실시 후 | V.9.1) 분담기준 참조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협의 | 교육1일전 | 실시 전 | 실시 후 | 교육필요시 실시 |
| POS사용료 | 협력업체 | 계약시 협의 | 매월 | 실시 전 | 실시 후 | - |

| 테이블오더 사용료 | 협력업체 | 계약시 협의 | 매월 | 입고전 | 입고후 | |
|-----------------------------------|------|--------------------------|-------------------------------|------|------|--|
| 계속가맹비 (로열티) | 가맹본부 | 550 천원 | 매월 25일 | - |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자율선택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자율선택 | 협의 | 협의 | 실시 전 | 실시 후 |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기준: 2023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재고관리 |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 수시 | 문의: 운영팀 |
| 회계처리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 수시 | 문의: 운영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갱신비용으로 금삼백삼십만원(₩3,3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귀하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계약서 제34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 철거 내지 제거 후 당사는 정산잔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반납이 불가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번호 | 품목 | 단위 | 공급가격(단위 : 원) | | 거래처 | | |
|------|----|---------|--------------|----|-----|--|--|
| - 단호 | 급극 | 근귀 | 상한 | 하한 | 기내시 | | |
| 1 | | 케다니하 어이 | | | | | |
| 2 | | 해당사항 없음 |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 명칭 | 관계 |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비고 |
|----|----|--------------------------------|---------------|----|
| - | - | 없음 | -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상품 • 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연간거래총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2) 당사가 해당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관계 | 상품・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 | - | 없음 | - | - | - |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메뉴 참고 |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각 메뉴별로 조합하여 판매 가능함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고객)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체 | 당사 또는 당사의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 상품공급의 | |
| 다른 가맹점사업자 |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중단 또는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중절인 비중 립지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흑담정'과 동일한 업종으로 곱창, 수육, 뼈다귀를 이용한 탕,찜 류를 메뉴로 하는 업종 | 흑담정 | 해당 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아웃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6차선 이상 도로 및 하천, 구릉 등과 부동산 공법상 지역, 지구개발로 인한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나 이로 인한 새로운 쇼핑가 및 집객시설 등 상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비고 |
|---|---|-------------------------------------|
|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 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 료 | 서면 통지후 영업지 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외 영업활동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는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영업표지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가맹점 | | | |
| 대리점 | | 해당없음 | |
| 일반소매점 | | ᄱᇰᆹᆷ | |
| 기타 | | |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 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온라인 | | | | |
| 홈쇼핑 | | 해당 | 당없음 | |
| 전화권유판매 | | | |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 연도 |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
|--|--------------|
| 군 시 |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 D-180 ~ D-90 |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36조 1항 |
| ○ [흑담정]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공급품,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다 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 체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1호 |
|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2호 |
|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 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3호 |
|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4호 |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7조 제1항 5호 |
|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제37조 제1항 6호 |
| ○ 영업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 | 제37조 제1항 7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8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항 하지 않는 경우 | 제37조 제1항 9호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의한 노후 점 포설비의 교체 . 개량.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37조 제1항 10호 |
|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급품 등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37조 제1항 11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12호 |
|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등), 판매방법, 서비스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니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제37조 제1항 13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 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제37조 제1항 14호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제37조 제1항 15호 |

나.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0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 가 개시된 경우 | 제37조 제2항 1호 |
| 0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제37조 제2항 2호 |
| 0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 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7조 제2항 3호 |
| 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 | 제37조 제2항 4호 |

| | 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
| 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7조 | 제2항 | 5호 |
| 0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7조 | 제2항 | 6호 |
| 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제37조 | 제2항 | 7호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제37조 | | |
| 0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제37조 | 제2항 | 9호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맹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가맹계약 종료 합 의서 체결, 양수인 가맹계약 체결 (7일 이내) → 양도 완료 | |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에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경우에는 당사는 양수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본부 승인 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 인 → 교육 수료 |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 인 → 교육 수료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 인 → 교육 수료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기존의 영업지역 내에서 1 년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 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관리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자의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전동의를 얻어 휴무 및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24시간 | 365일 | 문의: 관리팀 1577-094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가 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사전동의없이 연속하여 3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제한하지 않음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본사 운영팀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수시 | 본사 운영팀 |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본사 운영팀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흑담정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및 지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예정이며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 8 | 라그 서건 | | 부담비율 | ㅂ다 저비 | 비고 | |
|-----|--------------------|-------------------|--------------------|-------------|-------------------|--|
| 구분 | 광고 성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미ᅶ | |
| | 브랜드이미지광 고, 상품광고 | 광고비의 50% | 50% (가맹점 수로 균분) | 과그비 브다저‡니>> | 대중매체 광고 | |
| 광고 | 가맹점모집+상품 광고 | | 25% (가맹점 수로 균분) | 광고비 분담절차2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 |
| | 가맹점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 |
| 판촉 | 행시 | ㅏ에 따라 달 (별도공고) | · · | 판촉비 분담절차3) | 개별 행사, 광고 | |

²⁾ 당사는 '광고계획 및 가맹점 부담액"을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시 전체 가맹점이 참여하여야 하며, 가맹점 부담비율에 따라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³⁾ 당사는 '광고계획 및 가맹점 부담액"을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동의시 전체 가맹점이 참여하여야 하며, 가맹점 부담비율에 따라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단. 70% 미만 동의시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 부담비율은 참석한 가맹점사업자가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만약,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당시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 어 시행되는 판촉행사가 있다면 당연 참여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분담비용이 전혀 없거나, 가맹본부가 전액 정산하는 경우는 별도 분담절차없이 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물제작, 인쇄물제작 등 홍보물, 홍보소모품, 경품 등을 제작 시에는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위약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9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및 제3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38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①항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 철 거 내지 제거를 위반할 경우 지체 1일당 금오십만원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9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의무,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

전공지후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 위약금으로 금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22조(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취급품목)를 위반할 경우 금삼천만원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제37조(계약의 해지)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일방적 해지·중단·종료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금 지원받은 금액 + 100만원/월 X 잔여개월수]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평,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 45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 | |
| 상담 |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서 14일전 제공 | "IV. 가맹점사업자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D-45 | 의 부담 > 1. |
| 가맹금 예치 |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 D-50~49(1일) | 영업개시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49~48(1일) | 이전의 부담"에서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8~46(4일) | 확인 |
|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 D-15~10(5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 D-16~1(15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4~1(14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자율 분쟁 협의회를 통하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 가맹본부 | o간판교체 비용 o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
| 부담비용항목 |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 | ㅇ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
| 제외사유 |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

비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 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실비용을 미리 공지하고 청구할 수 있다. | 문의: 관리팀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부담 (요청 시 별도 협의) | 문의: 관리팀 |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명 또는 내용 | 신용제공자 | 금액 | 신용형태 | 신용제공조건 |
|------------|-------|---------|---------|----------------|
| KB공급망밸류업대출 | 국민은행 | 최대 5천만원 | 가맹본부 보증 | 본사 승인 |
| 주방기기/집기 렌탈 | 오진양행 | 최대 4천만원 | 주방기기 담보 | 신용제공자 물품 렌탈 |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가 필수 품목 미사용 등 가맹계약서 미준수시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시 일시상환을 조치하 거나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제공을 원하는 경우 02-1577-0946으로 상담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 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최초교육 | 영업 중 인지해야할 사항 가맹점 경영 교육 본사규정 및 방향 | 집단강의 또는 점포실습 | 개점 전 | 신규교육 |
| 정기교육 | 필요시 계획하여 실시 | 사전 공지 | 사전공지 | 정기적 |
| 특별교육 | 필요시 계획하여 실시 | 사전 공지 | 사전공지 | 비정기적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5일 | 5,500 (2인 기준) 본사교육 추가 1인당 16.5만원 현장교육 추가 1일당 33만원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신 메뉴 출시 등 |
| 특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필요시 실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 연번 | 지역 | 직영점명 | 주소 |
|----|----|------|------|
| -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해당없음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산정기준 |
|----------------------|------|
| 해당없음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577-09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 | | | | | | (# 1) |
|----------|--------------------------|--------------------|------------|-------------|------|------------|
| | | 가맹금(| 예치신청 | 성서 | | 처리기간 |
| | | 102 | " 120 | , i | | 즉시 |
| | 상호(가맹점)명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 | |
| | 주소(사무소) | | | | (전화: |) |
| | 상호명(영업표지) | 주식회사 우 | 분트월드 | (흑담정) | | |
| 가맹 본부 | 성명(대표자) | 이 권 효 | | | | |
| LT | 주소(사무소) | 서울시 송파 (오금동, 신대 | | 로 302, 601호 | | 577-0946) |
| 예치가명 | 뱅금 | ₩ | | (금 | | 원 정) |
| 신청인의 | 의 계좌 | | | | | |
| 가맹본부 | 부의 계좌 | | | | | |
| | 사업거래의 공정 2항에 따라 위와 | | | · | | |
| | | 년 | 월 | 일 | | |
| | | 신청인 | <u>l</u> : | | (서 | 명 또는 인) |
| 예치 | 지기관의 장 귀 ⁱ | \ | | | | |
| | 지점장 | ~1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점사업자 현황 제공확인서4)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본부 | (주 |)우분트월드 | 영업표지 | 흑담정 | | |
|---------------|---|------------|---------------------------|--------------------------------------|--|--|
| 기메뉴 | 제공사실 | "정보공개서, 가맹 | 계약서, 인근가맹 아래에 자 | !점 현황을 제공받았습니다 ." 라고 필로 작성 | | |
|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 ,,,,,,,,,,,,,,,,,,,,,,,,,,,,,,,,,,,,,,, | ™ | | " | | |
| 시 글 국 6 부분 | 제공일시 | 년 월 | 일 시 | 제공 장소 | | |
| . – | 주소 | | | | |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 연번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가민 | 행희망자 점포예정지 | | |

| 가맹본부는 | 가맹희망자에게 | 정보공개서 닭 | 및 인근 | 가맹점현황을 | 제공하였고, | 가맹희망자는 | 정보공개서 |
|-------|----------|---------|------|--------|--------|--------|-------|
| 가맹계약서 | 및 인근 가맹점 | 현황을 제공받 | 았음을 | 확인합니다. | | | |

| 가맹본부 : | (인) | 가맹희망자: 성명_ | 서명 또는 (인) |
|--------|-----|------------|---------------|
| | | | |

⁴⁾ 작성 완료 후 복사본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별첨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장비 및 집기 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원·부재료, 완제품 등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필수품목(제품)은 당사 직접 제조 품목입니다.